

2000. 6. 5

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동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-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·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	2000.5.24	2000.5.24	2000.5.30	2000.5.30	총무과장
·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	"	"	"	"	"
·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	"	"	"	"	세정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일체 정비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중 관계법령의 개정, 법문, 형식, 규제개혁 및 조직개편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

2) 주요골자

-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4건
- 규제개혁 관련 3건
-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4건
- 법문 형식등에 맞지 않는 조례 2건

나.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현실에 부적합한 「리개발위원회조례」는 폐지하고,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「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」를 대폭 정비하여 개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기능
 - 읍·면·동행정에 대한 지역협의회
 - 읍·면·동행정에 대한 자문
 -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협의
 - 민간직능단체 및 리통반에 대한 지원
- 구성 : 각계각층 지역원로 25명 내외
- 회의 : 정기회(4회), 임시회(수시)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2) 주요골자

-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
 - 현행 :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
 - 개정 :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내지 7급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가.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증개정조례안

- 상위법령의 개정과 규제개역 및 법문형식등 자구를 정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.

- 총 10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, 자문, 지원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을 해당 읍면동 개발위원회라 하며
- 지역개발 및 주민공동이익사업, 문화복지후생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과 직능단체, 리통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음.
- 또한 위원은 지방의회, 유관기관장, 직능단체장, 지역원로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수는 2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
-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4. 18일 의원간담회의시 집행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바 있으며 현 실정에 부적합하고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기존 조례를 대폭정비 개정하여 개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음.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-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)이 '99. 12. 31.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가 '99. 12. 31. 개정됨에 따라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을 각 시·군에 2000. 3. 29일 일괄 통보하여 각 시·군에서 감면조례를 개정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.

4. 질의.답변요지

가.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고문변호사의 월수가는?

<답변> 월 16만 5천원임.

▶ 질의 : 양성인감사고의 변호사 선임은?

<답변> 1심은 고문변호사 2심은 별도 선임 하였음.

▶ 질의 : 현재 일제정비 되지 않은 조례가 아직도 있음.

<답변> 누락된 사항은 즉시 정비하겠음.

▶ 질의 :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 개정 시기는?

<답변> 관련과와 협의 하겠음.

나.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제14조에 읍면동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추천자 중에 호선된다면 읍면동장은 위원이 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?

<답변>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게 함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▶ 질의 : 설치의무 사항인지?

<답변> 강제사항은 아님.

▶ 질의 : 정기회 운영결과와 위원회 규약을 시에서 보고 받는지?

<답변> 읍면동장이 행정사항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는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음.

▶ 질의 : 설치의무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며 종전과 변경이 된 사항은?

〈답변〉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종전에 주민의 이해 규정에 관한 사항등 여러 가지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제정비한 사항임.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없음.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가. 충주시고문변호사조례등중개정조례안 1부

나. 충주시읍·면·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부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